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2018. 8.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4
2. 감사대상기관 .....	4
3. 감사중점 .....	4
4. 감사기간 및 인원 .....	4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창경궁관리소>

1. 창경궁 담장 보수공사 일부 설계변경 부적정 및 시공 미흡 (시정·주의) ..	6
2. 보증 증권 등 징구 없이 선금 지급 (기관주의) .....	12
3. 창호 도배공사 수량산출 미흡 (기관주의) .....	13
4. 민관협력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모범사례) .....	15

#### <창덕궁관리소>

1. 창덕궁 후원 옛 초식사 권역 환경(경관) 정비 필요 (통보) .....	17
2. 방호근무자 일일 근무지 합리적 배치 필요 (통보) .....	18
3.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모사도 제작 관련 분석연구 중복 계상 (시정) ..	20
4. 문화재수리 현장 일부 전시테마로 활용 (모범사례) .....	22

## <경복궁관리소>

- 1. 수목 관리 도면 재정비 필요 (통보) ..... 23
- 2. 경복궁 경관조명 개선사업 일부 터파기 공사 미흡 (시정) ..... 24
- 3. 문화재 현장체험 개선방안 미준수 (기관주의) ..... 26
- 4. 음성안내기 운영방식 및 안내책자 판매방법 개선 필요 (개선) ... 28

## <공통 -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 1. 수입대체경비 사용 관련 지침 일부 미준수 (기관주의) ..... 30

## <공통 -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공능문화재과 (개선)

- 1. 피복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통보·개선) ..... 31
- 2. 회계관계공무원 입면 보고 및 인계·인수 미흡 (기관주의) ..... 33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는 각각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의 보호 및 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창경궁관리소가 2015.6.1.부터 6.5.까지, 창덕궁관리소가 2015.6.8.부터 6.12.까지, 경복궁관리소가 2015.11.23.부터 11.27.까지 각각 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창경궁관리소와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궁궐의 보수 및 관리 현황, 유물 및 소장품 관리 현황,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 자체규정 준수 실태,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창경궁관리소는 2018.4.9.부터 4.13.까지, 창덕궁관리소는 2018.4.16.부터 4.20.까지, 경복궁관리소는 2018.4.23.부터 4.27.까지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 문 화 재 청

시 정(환수) · 주 의

제 목 창경궁 담장 보수공사 일부 설계변경 부적정 및 시공 미흡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 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일부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제14조(검사)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감독과 검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이하 '해당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을 임명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 내용 및 범위,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실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 1]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주요 공사내용 및 변경계약 내용
당초	2017.8.2. ~2017.11.29.	557,150천원	○○건설(주) (대표 ○□□□)	○ 사괴석 담장(폭 0.9m) 173m 전체 해체 보수 ○ 사괴석 담장(폭 0.9m) 70m 기와 및 줄눈 보수
1차 변경계약	2017.8.2. ~2017.11.29.			○ 사괴석 만들기 품 반영 ○ 빗물받이 박석 및 낙하물 방지망 추가 ○ 사괴석 담장(폭 0.9m) 91m 전체 해체 보수(공사범위 축소)
2차 변경계약	2017.8.2. ~2017.12.9.			○ 사괴석 담장(폭 1.5m) 91m 전체 해체 보수(기존 담장폭 확인·조정) ○ 연목이 설치된 공장 형식으로 변경 ○ 담장기와이기를 지붕기와이기로 변경 ○ 안정화된 기초와 지대석은 공사 제외

창경궁관리소가 해당공사의 변경계약 시 내역을 조정한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창경궁 북동측 담장 보수공사 변경계약 시 내역 변경 현황

변경 전 내역	변경 후 내역		변경사유
	내역	규격	
지대석 할석	지대석 기계절삭	-	노임 산정 오류로 공사비 증가 우려
사괴석담쌓기	사괴석담쌓기	사괴석만들기 품 포함	사괴석 만들기 품 누락
담장기와이기	지붕기와이기	그늘림한식기와	소와/여와, 부와, 착고
		기와이기	-
		마루기와이기	-
		도편수	-
-	목공사	일반재	육송/원목, 각재, 판재
		평연재 조립	도리양식
		부연치목	기계장비
		평(말굽)서까래 치목	기계장비
		도편수	-
-	거친돌(박석) 깔기	-	자문 의견에 따라 신설
		박석	

창경궁관리소는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시 '사괴석 담쌓기'는 사괴석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계약 후 구입비용에 '사괴석 만들기' 비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1차 변경계약하면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 품을 반영하였는데, 설치되는 사괴석 크기(180mm×180mm×250mm<sup>1)</sup>)가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 기준 크기(210mm×210mm×350mm)보다 작으므로 이에 따라 품을 보정<sup>2)</sup>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또한,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에는 면과 뒤뿌리 가공 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에 노출되는 사괴석 면을 별도로 다듬으려고 산출하였던 '정다듬(기계장비)' 내역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한편, '담장기와이기'는 담장과 1m를 이는데 필요한 기와 개수와 품 등을 계산하였으나, 계약 후 '담장폭을 1.5m로 확대하고 연목을 설치하라'는 자문의견에 따라 2차 변경계약하면서, '특수한 담장기와이기(궁장 등)는 지붕기와이기에 따르거나 별도 계상한다'는 표준품셈 '담장기와이기'의 주석 내용에 따라 '담장기와이기'를 삭제하고 '기와이기', '마루기와이기' 등 지붕기와 1m<sup>2</sup>를 이는데 필요한 기와 개수와 품을 새로 계산하여 내역을 신설하였다.

1) 뒤뿌리를 1차 이상 되게 하라는 자문의견에 따라 실제로는 뒤뿌리를 300mm로 시공  
 2) 실제 시공된 사괴석은 180mm×180mm×300mm 크기지만 표준품셈에는 210mm×210mm×350mm 내외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공면적 차이에 따라 품을 계산할 경우 표준품셈의 73% 수준임.

공사 중 신규 내역은 새로운 공정이 발생했을 때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연목 설치 등 새로운 공정에 따라 '목공사' 내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나, '담장기와이기'는 기존에 내역이 있으므로 '지붕기와이기'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내역에 늘어난 담장폭 만큼의 물량이나 단가를 조정하는 등 '별도 계상'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그리고, 창경궁관리소는 자문의견에 따라 사괴석 뒤뿌리를 당초 250mm에서 300mm 이상으로 변경 시공하여 그 사이층의 '채움석쌓기' 물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담장폭 조정(당초 0.9m에서 1.5m로 확대)에 따른 '채움석쌓기' 물량 재산출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창경궁관리소는 기존에 불안정한 담장부분까지는 금회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담장폭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보수할 수 있는 담장 길이가 줄어들자, 불안정한 담장부분(담장길이 4m)은 설계변경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보수해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면서, 일반관리비율 5.5%와 이윤율 14.460%를 각각 5.0%와 12.783%로 감 조정하여 계약금액 변경 없이 2차 변경계약을 실시하였다.

요컨대, 창경궁관리소는 ▲ 실제 설치되는 사괴석 크기가 표준품셈의 기준 크기보다 작으므로 이에 따라 품을 보정하고, ▲ 구입 사괴석 면을 별도로 다듬기 위해 산출하였던 '정다듬(기계장비)' 내역을 삭제하며, ▲ 늘어난 담장폭 만큼 기존 '담장기와이기'의 물량이나 단가를 조정하고, ▲ 사괴석 뒤뿌리를 실제 시공한 300mm를 기준으로 '채움석 쌓기' 물량을 재산출하며, ▲ 착공 시의 일반관리비 비율 5.5%와 이윤 비율 14.460%를 유지하고, ▲ 담장길이 4m에 해당하는 '사괴석 담쌓기'와 '채움석쌓기' 물량을 포함하여 설계변경 함이 타당하였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했을 경우 해당공사의 계약 조정금액은 [붙임 1]과 같이 513,933천원으로, 해당공사의 감독·검사공무원은 위와 같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금액을 534,925천원으로 확정함으로써, 20,992천원이 과다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빗물받이 거친돌, 줄눈 면처리, 지대석 가공 일부 미흡

감사기간 해당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담장 바깥쪽 아래 빗물받이는 거친돌<sup>1)</sup>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기계절삭된 돌이 설치되어 있었고, 담장 바깥 일부 사괴석

1) 마름질이나 다듬질을 하지 않은 거친 상태의 돌

면이 줄눈제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지대석을 도드라다듬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마감면 일부는 다듬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16,584,730원에 해당하는 [붙임 2] 내역의 공정은 재시공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창경궁관리소는 지대석 표면을 '도드라다듬(25는, 기계장비)' 할 경우 마감면1)에 한하여 물량을 산출해야 함에도, 매립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산출하였고,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실제 시공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1. **창경궁관리소장은** 변경계약 시 신규 내역의 품 적용과 물량 산출을 잘못하여 과지급된 공사비 20,992,00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하고, 미흡한 공사부분 16,584,730원은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시정)
2. 해당공사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의)

1) 마무리되는 걸표면

[붙임 1] '가'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내역

준 공 내 역			조 정 내 역 (안)				증감(원)	조치 사항
내역	물량	금액(원)	내역	물량	금액(원)	조정사유		
그을림한식기와(여와)	5612매	8,704,907	담장기와와이기	97M	17,037,274	늘어난 담장폭만큼 면적 비율(1.692)로 기존 내역의 단가를 보정	-14,176,386	환수
그을림한식기와(부와)	2230매	3,459,006						
그을림한식기와(착고)	718매	2,227,413						
기와이기	213.4㎡	10,382,677						
마루기와이기	95M	4,577,833						
도편수	7.11인	1,861,824						
채움석쌓기	191.25㎡	30,090,509	채움석쌓기	184.28㎡	28,993,877	실제 사괴석 뒤뿌리 기준으로 재산출	-1,096,632	
-	-	-	채움석해체	184.28㎡	31,161,987	누락 내역 반영	31,161,987	
사괴석담쌓기	296.4㎡	142,579,366	사괴석담쌓기	311.6㎡	117,476,627	사괴석 크기 차이에 따라 품 보정	-25,102,739	
정다듬(기계장비)	290.07㎡	7,784,073	-	-	-	'사괴석 만들기' 품 반영에 따라 삭제	-7,784,073	
도편수	28.7인	7,515,382	도편수	20.48인	5,362,892	채움석쌓기 물량 조정에 따름	-2,152,490	
한식석공	16.15인	3,446,313	한식석공	15.58인	3,324,678		-121,636	
잡석	211.65㎡	4,559,575	잡석	204.68㎡	4,409,421		-150,154	
잡석운반비	211.65㎡	2,569,854	잡석운반비	204.68㎡	2,485,224		-84,630	
일반관리비	5.0%	20,868,569	일반관리비	5.5%	21,658,981	착공시 비율 반영	790,412	
이윤	12.783%	46,638,351	이윤	14.460%	50,336,391	착공시 비율 반영	3,698,040	
총공사금액		534,925,000	총공사금액		513,933,000		<b>-20,992,000</b>	

[붙임 2] '나' 사항 해당 내역

준 공 내 역			조 정 내 역 (안)				증감(원)	조치 사항
내역	물량	금액(원)	내역	물량	금액(원)	조정사유		
거친돌(박석)깎기	54㎡	1,357,721	거친돌(박석)깎기	54㎡	1,357,721	다듬기 미흡	1,357,721	
박석	300개	10,158,494	박석	300개	10,158,494		10,158,494	
도드라디듬(25눈기계장비)	미흡부분 5㎡	350,125	도드라디듬(25눈기계장비)	미흡부분 5㎡	350,125	다듬기 미흡	350,125	
줄눈바름-사과석벽	미흡부분 60M	2,719,860	줄눈바름-사과석벽	미흡부분 60M	2,719,860	면석 청소 미흡	2,719,860	
일반관리비	5.0%	799,117	일반관리비	5.5%	926,258	착공시 비율 반영	926,258	
이윤	12.783%	821,621	이윤	14.460%	1,072,278	착공시 비율 반영	1,072,278	
합계(원단위 절사)		16,206,938	합계		16,584,736		<b>16,584,730</b>	

재시공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보증 증권 등 청구 없이 선금 지급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동 예규 제34조(적용범위) 및 제35조(채권확보)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 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증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으로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정부출연법인, 농협 조합 및 중앙회 등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창경궁관리소는 '2016년 창경궁 야간특별관람 관리 위탁' 용역을 (주)○○○○와, 계약(2016.3.1.-10.28./327,870,000원)한 후 계약상대자가 3회(2.23., 4.28., 7.14.)에 걸쳐 선금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총 227,535,430원(총 계약금액의 69.4%)의 선금을 지급하였고, '창경궁 소방 물탱크 및 펌프실 설치 공사(소방)'를 (주)○○○○과 계약(2015.8.24.-11.21./230,799,850원)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9.16.)함에 따라 96,679,000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창경궁관리소는 계약상대자가 보증증권 제출 의무 제외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상기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은 뒤 선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창호 도배공사 수량산출 미흡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창호지바르기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창호지 바르기(㎡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창호지	950mm×600mm	장	2	
풀	-	kg	0.02	
도배공	-	인	0.024	
보통인부	-	인	0.024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창경궁관리소는 2017년에 '창경궁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창호 도배공사'를 추진할 때 위 품셈을 기준으로 도배해야 할 면적 760.82㎡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서, 창호지의 경우 표준품셈의 규격보다 큰 창호가 다수 있고, 바르려고 하는 창호지(국산 이합지)가 한 가지 규격(1,500mm×2,100mm)으로만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손실률<sup>1)</sup>을 임의로 고려하여 총 605장으로 별도 계산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경우 대상 건물과 그 창호 개수가 많지 않으므로 창호지 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사기간 대상 창호 수량을 조사한 결과, 창호지를 재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창호지 규격보다 작은 창호는 개당 창호지 1장으로, 창호지 규격을 초과하는 창호는 개당 2장으로 산출하면 총 508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공사금액은 16,319,730원으로, 창경궁관리소는 이보다 1,755,770원을 과잉 계산하여 소요예산을 산출, 18,075,5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760.82㎡ ÷ ( 1,500mm×2,100mm) = 242장으로 손실률을 고려하여 2.5배인 605장을 산출하였음.

# 문 화 재 청

## 모 범 사 례

제 목 민관협력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내 용

창경궁관리소는 2011년부터 (사)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숲해설 자원 봉사 활동인 '왕의 숲 체험학교'와 관련하여 해설가 입장료 면제, 홈페이지에 홍보, 해설사에 대한 궁궐안내 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2017년에는 민간기관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궁에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 예산절감과 고궁 관광자원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협회와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왕의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7.3.24.)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 협약은 두 기관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참여인원 조정을 통한 관람 만족도 제고, 안전관리 및 홍보,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 2회 해설코스를 달리하여 궁궐의 수목과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해설을 진행, 총 62회 1,485명이 참여하였다.

[표] 2017년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왕의 숲 이야기' 운영 현황

구 분	운 영 횟 수	참 여 인 원
4월	10회	395명
5월	8회	150명
6월	8회	181명
7월	10회	172명
8월	8회	135명
9월	9회	132명
10월	9회	181명
합 계	62회	1,485명

1) 2011년의 경우 '도시 숲 궁궐탐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창경궁관리소는 ▲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품질 높은 해설 진행으로 연간 약 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sup>1)</sup>하였고, ▲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등으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 궁궐과 숲을 접목한 해설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서 유사기관의 문화유산 활용에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1) 2017년의 경우 : 1일 2명 숲 해설가 배치 × 50,000원 × 62회 = 6,200,000원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창덕궁 후원 옛 초식사 권역 환경(경관) 정비 필요

관계기관 창덕궁관리소

### 내 용

창덕궁관리소의 주된 업무는 창덕궁 내 문화재와 시설물, 식생 등의 보호·관리로, 창덕궁 내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개선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 창덕궁 현장을 점검한 결과, 창덕궁 후원 옛 초식사 권역에 아래 [표]와 같이 기와, 사괴석 등 궁궐 보수용 자재와 별채임목 및 고건물 폐자재 등이 혼잡하게 쌓여 있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보수용 자재를 정리하고 별채임목과 폐자재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표] 초식사권역 내 불요 잔재물 야적 현황

종류	추정수량	발생시기	발생사유	조치방안
보수용 기와	4,000장	2017.12.8.	보수자재 구입	보관시설 설치 및 정리
보수 교체기와	46㎡	미상	보수완료 후 부재	보관시설 설치 및 정리
건설 잔재물(석재)	120t(120㎡)	2017.7.21.	2017년 매표소 철거공사	보관시설 설치 및 정리
건설폐기물	60t(40㎡)	미상	시설공사·정비 잔재	외부 반출
별채임목	200t(330㎡)	2017.5.13.	2017년 수목제거 사업	외부 반출

창덕궁관리소 또한 창덕궁 후원 옛 초식사 권역에 대한 환경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창덕궁의 보존·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덕궁관리소장은 창덕궁 후원 옛 초식사 권역에 쌓여 있는 자재를 정리하고 별채임목과 폐자재 등을 반출하는 등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방호근무자 일일 근무지 합리적 배치 필요

관계기관 창덕궁관리소

### 내 용

창덕궁관리소 내규 「창덕궁관리소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에 방호근무자는 관할 내의 문화재 및 재산에 대한 경비·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동 규정에 방호근무자는 3개 권역 12개소<sup>1)</sup>에 배치하되 각 조별 순번제로, 일일 단위로 이동근무를 실시하고, 일일 근무지 명령에 의하여 지정 근무위치에 근무 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변 고건물 등의 안전 상태를 체크하고, 방호팀장은 방호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장에게 보고 후 결재 받아 매일 방호근무 일지에 주·야간 근무상황부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덕궁에는 방호직공무원 8명<sup>2)</sup>과 청원경찰 7명, 안전관리원 13명 등 총 28명(2018.4.20.현재/휴직자 1명 포함)의 방호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방호근로자의 근무 및 휴무 명령은 방호직공무원이 해당 월이 시작되기 전 소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 근무지 명령은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매일 방호직공무원이 14개소<sup>3)</sup>에 대하여 순번제가 아니라 방호근무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 시행하고 있다.

1) ○ 돈화문 권역 : 돈화문, 주차장

○ 내전 권역 : 율내각사, 인정전과 선정전, 회정당과 대조전, 승화루, 낙선재

○ 후원 권역 : 회우정, 영화당, 존덕정, 취규정, 의풍각

2) 일반 방호직공무원 6명, 시간선택제 방호직공무원 2명(화·수·목 근무)

3) 돈화문, 율내각사, 의풍각, 주차장, 인정전과 선정전, 회정당과 대조전, 승화루, 낙선재, 영화당, 애련정, 존덕정, 회우정, 연경당, 돈화문 개문으로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의 취규정 1개소를 빼고 연경당과, 애련정, 돈화문 개문 3개소를 추가하여 배치

# 문 화 재 청

## 시 정 (환수)

**제 목**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모사도 제작 관련 분석연구 중복 계상

**관계기관** 창덕궁관리소

**내 용**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를 보존처리하고 모사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다.

[표]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용역 계약 현황

계약명	차수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사업목적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보존처리	1차	120,000천원	2015.8.6. ~2016.2.2.	★★★★★★ (대표 ☆☆☆)	총석정질경도, 금강산만물 초승경도 훼손부분 보존처리
	2차	116,160천원	2016.1.21. ~2016.12.27.		
	합계	236,160천원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모사도 제작	1차	75,273천원	2015.10.7. ~2015.12.18.	○○○○○○○○○○ (대표 ◆◆◆)	부벽화 모사도를 제작, 전시 및 연구에 활용
	2차	112,909천원	2016.1.22. ~2016.12.15.		
	합계	188,182천원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보존처리’(이하 ‘보존처리’) 과업지시서에 사전조사로 ‘현미경 관찰 등의 비파괴 분석’과 ‘슬라이드 촬영, 디지털 촬영’ 및 ‘측광사진, X-ray 촬영, 자외선 촬영’ 실시를 명시하고, 산출내역서에 사전조사로 ‘안료분석, 색차계, 적외선, 현미경 촬영’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상대자인 ★★ ★★★★★에서는 고해상도 촬영을 실시하고 현미경 관찰, XRF(X-선 형광분석기) 분석 결과를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채색안료 분석’(◁▷대 ◀▶▶▶▶▶▶▶)으로 정리하여 수리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모사도 제작’(이하 ‘모사도 제작’) 과업지시서 사업내용으로 ‘사전조사’를 기재하고 산출내역서에는 ‘안료분석, 직물분석 등’의 사전조사 항목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상대자인 ○○○○○○○○○○에서는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연구활동비로 ‘안료·바탕재 분석(적외선,

이에, 감사 기간 중 2018년 1월 근무자별 근무 장소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후원권역1’에 27일동안 5명씩 총 135회 방호근무자가 배치되었는데, 이 중 일반 방호직공무원은 11회로 1인당 1.8회, 시간선택제 방호직공무원은 8회로 1인당 4.0회2), 청원경찰은 33회로 1인당 4.7회, 안전관리원은 83회로 1인당 6.4회 배치 되어 방호근무자 직렬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 방호직공무원 6명 중 1명은 6회, 다른 1명은 4회, 또 다른 1명은 1회 후원권역에 배치되고, 나머지 3명은 배치되지 않는 등 같은 직렬의 방호근무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존덕정 등 후원권역은 돈화문(주 출입구나 방호근무자 사무실)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어, 이곳에 배치된 방호근무자는 다른 권역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출퇴근이나 식사, 휴식 등이 어려워 근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창덕궁은 방호근무자의 근무지 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덕궁관리소장은** 방호근무자의 근무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에는 의풍각이 후원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돈화문이나 인정전과 가까워 영화당, 예린정, 존덕정, 회우 정, 연경당을 후원권역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음.  
2) 일반 방호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 방호직공무원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19회로 1인당 2.4회 배치된 것임.

XRF, 현미경, 색도) 8,000천원을 계상하고, 제작보고서 재료분석 장에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재료의 특성 분석'(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을 수록하여 창덕궁에 제출하였다.

감사기간 중 '모사도 제작' 보고서와 '보존처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모사도 제작' 보고서에 실린 안료, 직물, 먹에 대한 분석 결과 중 안료 분석 결과가 '보존처리'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창덕궁관리소는 회정당 부벽화와 관련한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안료 분석' 과업을 중복하여 실시하였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분석 비용 2,000,000원을 초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창덕궁관리소는 중복 계상되어 지급된 안료 분석 대가를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덕궁관리소장은** 창덕궁 회정당 부벽화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 용역 추진 시 중복 계상하여 초과 지급한 안료 분석 대가 2,00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모 범 사 례

**제 목** 문화재수리 현장 일부 전시테마로 활용

**관계기관** 창덕궁관리소

**내 용**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기업인 ○○○○ ○○○○로부터 창덕궁 고건축물 창호 목재장식 등 정비 명목의 후원금 50,000,000원을 지정기탁(2016.10.12.) 받았고, 창덕궁관리소는 '고건축물 구들 및 굴뚝 보수정비' 12,000,000원 등 후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제출(2016.11.8.)하였다.

이후 창덕궁관리소는 수강재 건넌방의 구들 해체 현황을 공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동 안건으로 자문회의를 개최(2016.11.28.), 구들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 전시하기로 하면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계약한 '창덕궁 수강재 구들 및 굴뚝 정비공사'(2017.1.20.~2017.4.19./12,000,000원) 계약 상대방인 (사)▷▷▷▷▷협회사와 '한국 난방문화(전통온돌) 특별 전시·관람'(2017.2.14.~2017.4.2.)을 진행하였다.

창덕궁관리소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 기업 후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보수'하면서 전시테마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구들 보수현장을 공개함으로써 궁궐문화 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만족도도 높였다는 점에서 유사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판단된다.

요컨대, 창덕궁관리소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관람 대상의 하나로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재청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수목 관리 도면 재정비 필요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문화재청 훈령 「조경관리규정」 제7조(수목대장 및 도면)에 각 기관의 장은 문화재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수목대장과 일련 번호가 명기된 도면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수목증감 보고)에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북공관리소는 2009년에 경북궁 내 교목을 전수 조사하여 수목 위치도면과 수목대장을 정비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수목이 2009년 대비 2017에 총 46.7% 증가하였는데, 수목의 증감사항은 수목대장을 정리하여 매년 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도면에는 그 위치를 수시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2009년과 2017년의 경북궁 내 수목 현황(수목 증감보고서 기준)

구분	2009.12.31. 기준	2017.12.31. 기준	증감량	증가율
교목류	3,128주	3,962주	834주	26.7%
관목류	10,169주	15,544주	5,375주	52.9%
합계	13,297주	19,506주	6,209주	46.7%

경북공관리소는 수목 증감보고 시 누락된 도면을 대장과 함께 정리하여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수목 관리도면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시 정 (감액)

제 목 경북궁 경관조명 개선사업 일부 터파기 공사 미흡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경북공관리소는 '경북궁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주)과 계약(2017.12.26.~2018.5.31./626,897천원)하고 감사기간 현재(2018.4.26.) 일부 조명기구 설치 후 조도 조절, 일부 관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통신선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1)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감사기간 중 상기 공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정 권역, 강녕전 권역, 교태전 권역의 관로는 인력으로만 터파기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일부 구간(약 349m)을 인력(20%) 외에 기계(80%)를 사용하여 터파기 하였다.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실정을 보고 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조속히 설계변경 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현재

1)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함.

(2018.4.26.)까지 설계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실제 공사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9,421,480원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표] 변경시공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안

구분	당초			변경			증감(원)	비고
	공법	수량	금액(원)	공법	수량	금액(원)		
사정전 권역	인력	214m	4,673,974	기계 80%+인력20%	111m	552,336	감 1,872,015	
				인력	103m	2,249,623		
강녕전 권역	인력	260m	5,678,660	기계 80%+인력20%	170m	845,920	감 2,867,050	
				인력	90m	1,965,690		
교태전 권역	인력	523m	11,422,843	기계 80%+인력20%	68m	338,368	감 1,146,820	
				인력	455m	9,937,655		
제경비							감 2,679,105	
부가세							감 856,499	
계							감 9,421,480	원단위 절사

이에 경북공관리소는 변경 공사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경북궁 경관조명 개선사업' 중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차액 9,421,480원을 감액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문화재 현장체험 개선방안 미준수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감사원은 2015년 문화재청 재무감사에서 '국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문화재 현장체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프로그램)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1)을 이용하여 집행하였다'면서 앞으로는 문화재 현장체험 여비를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항(프로그램)이 다른 일반사업비 예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요구(2015.4.20.) 하였다.

이에 창조행점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 현장체험 개선 방안 알림(창조행정담당관-1332, 2015.5.20.)'으로 각 부서와 소속 기관에 알렸는데, ① 정기조사 수행 시 담당자가 통행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③ 주말 또는 연가를 활용하여 진행,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과 담당 부서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사업부서와 소속기관에서는 정기조사 또는 전통문화교육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 주말과 연가를 활용하여 문화재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이 따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북공관리소는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1월 이후 감사기간까지 총 7회 45명(공무원 9, 청원경찰 3, 행정지원인력 33)에 대해 문화재 현장체험을 실시하면서, 근무일 또는 휴무일과 근무일에 걸쳐 출장 명령하고 그 여비를 기본경비 외 사업 예산에서도 지급하는 등, 감사원 요구사항이나 문화재청 개선 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

1) 7개 일반사업비 예산으로서 1100항(프로그램) 문화재정책기반구축, 1200항(프로그램) 문화유산교육연구, 2100항(프로그램) 문화재보존관리, 2200항(프로그램) 궁능원관리, 2300항(프로그램) 문화재보호, 3300항(프로그램) 문화재국제교류, 3400항(프로그램) 문화재활용임.

[표] 경북공관리소 문화재 현장체험 실시 현황(2015~2017년)

일 자	출장지	목적	참석자(명)	여비(원)	예산항목	
					항(프로그램)	단위사업
'15.12.1.(화)~2.(수)	전주	문화탐방 교육	공무원 2 행정지원인력 6	1,033,900	2200	2232
'15.12.7.(화)~8.(수)	전주	문화탐방 교육	공무원 1 청원경찰 1 행정지원인력 5	1,309,200	2200	2232
'15.12.14.(화)~15.(수)	부여	문화탐방 교육	공무원 2 행정지원인력 5	932,400	7100	7111
'16.8.29.(월)~9.1.(목)	목포	유적지 탐방자료수집	공무원 2	617,200	2200	2232
'17.12.11.(월)~12.(화)	강릉	직원 현장답사교육	청원경찰 1 행정지원인력 5	767,300	7100	7111
'17.12.12.(화)~13.(수)	강릉	직원 현장답사교육	공무원 1 청원경찰 1 행정지원인력 6	894,410	7100	7111
'17.12.14.(목)~15.(금)	강릉	직원 현장답사교육	공무원 1 행정지원인력 6	961,300	7100	7111
합 계		7회	공무원 9 청원경찰 3 행정지원인력 33	5,554,410		

\* 경북공관리소의 정기 휴일은 화요일임.

경북공관리소는 유관기관의 문화재 관리 및 관람객 응대 사례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문화재 현장체험을 추진하면서, 상기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숙지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상기 개선 방안에 맞는 문화재 현장체험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문화재 현장체험 시 '문화재 현장체험 개선 방안'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재 청

### 개 선

제 목 음성안내기 운영방식 및 안내책자 판매방법 개선 필요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 가. 음성안내기 운영방식 개선 필요

(사)●●●는 2005년경부터 경북궁 내 '환전소 및 음성안내기대여소'를 경북궁 관리소로부터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경에는 음성안내 원고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문화재위원 등에게 감수받은 후 음성안내기를 대여하고 있다.

궁능문화재과는 2015년에 4대궁 관리기관에 '4대궁 버튼식 음성안내기기 도입 요청(궁능문화재과-2726,2015.7.2.)'을 통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버튼식 음성안내기를 도입 배치하도록 하였고, 2018년 현재 경북궁을 제외한 4개 기관(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국립고궁박물관)은 음성안내기를 자체 운영 중이며, 음성 안내 원고 또한 자체 작성하고 있다.

감사기간동안 (사)●●●가 운영 중인 경북궁 음성안내 원고를 확인<sup>1)</sup>한 결과, 일부 단어, 한자, 수량 등 9개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에는 '국유재산'을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사용허가'를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북공관리소는 관리소가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소'의 토지나 건축물 외에 (사)문공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재산인 '음성안내기'는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1)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음성안내 하고 있으나 기존 원고인 한국어를 확인한 것임.

또한, 궁궐 안내 원고는 관람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북공관리소는 음성안내 원고를 작성하고 음성안내기를 자체 도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경북공관리소는 음성안내기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경북궁 안내책자 판매방법 개선 필요

경북공관리소는 2015년 6월부터 (사)●●●로 하여금 경북궁 안내책자를 판매 하도록 위탁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는 ‘환전소 및 음성안내기대여소’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매출액은 4,229,500원<sup>1)</sup>이었다.

그러나, 경북궁의 경우 흥례문, 신문문, 민속박물관 등 3개소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여 신문문 및 민속박물관으로 입장한 경우 안내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환전소 및 음성안내기대여소’가 있는 흥례문 근처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매표소와 안내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북공 관리소는 이를 고려하여 안내책자 판매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음성안내기 운영방식과 안내책자 판매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판매 실적 총 8,459권(한국어 4,586권, 영어 3,016권, 일어 343권, 중국어 514권) / 4,229,500원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수입대체경비 사용 관련 지침 일부 미준수

**관계기관** 창덕공관리소, 경북공관리소

### 내 용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 사업유형별 지침 5. 수입 대체경비에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를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나 사업 추진비로 규정하면서 관서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를 들고 있다.

창덕공관리소와 경북공관리소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궁능문화재과로부터 수입 대체경비를 교부받고 있는데, 감사 대상기간<sup>1)</sup>의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창덕공 관리소는 직원 정년퇴임 행사 비용 등 관서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나 신문구독 대금, 수해복구 구호물품 구입 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총 35회, 3,256,790원을, 경북공관리소는 직원 퇴직자 감사패 제작, 직원 경조사비, 체육행사 운영물품 구입 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총 19회, 5,400,720원을 수입대체경비로 집행하였다.

[표] 창덕공관리소 수입대체경비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창덕공관리소	30,528천원	33,280천원	63,687천원	15,000천원	142,495천원
경북공관리소	54,384천원	65,161천원	63,720천원	20,750천원	204,015천원

이에 창덕공관리소와 경북공관리소는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덕공관리소장과 경북공관리소장은** 관서업무추진비 성격이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로 집행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창덕공관리소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북공관리소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임.

# 문화재청

## 통보·개선

### 제 목 피복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 내 용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총 301명의 직원이 관람객 안내 및 각 궁궐의 문화재와 시설물, 수목 보호·관리, 관람 편의 시설과 전통문화 행사, 체험교육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직원 현황

구 분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계
창경궁관리소	15명	2명	26명	19명	62명
창덕궁관리소	19명	7명	40명	46명	112명
경복궁관리소	22명	5명	58명	42명	127명
계					301명

한편, 각 궁 관리소에서 집행<sup>1)</sup>한 피복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피복비 집행 현황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계
85,572천원	133,282천원	165,931천원	384,785천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궁궐의 품격에 맞는 근무복을 개발하여 궁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을 개정(2014.6.9.)했는데, 여기에는 안내해설사, 매수표원·안전관리원·방호원, 경상관리원 등으로 그룹을 나누어 제복별 제조방법,

1) 창경궁관리소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창덕궁관리소와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점검하였음.

세부 재질, 부착물의 종류와 규격,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종류별 착용기간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복비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등 3개 궁 관리소 모두 피복비를 집행함에 있어 근무복 착용 후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해설사, 매수표원, 관리반원, 방호직, 사무실 직원 등 팀별로 각각 다른 종류의 근무복을 구입하고, 근무복에 기관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 근무복을 통일성 없이 구입·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람객이 직원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히, 창덕궁 점퍼(동절기 근무복)의 경우, 2016년에 A점퍼(남녀-L 상표, 남색)를 다량 구입한 이후 신규 수요가 발생하자 당초와 다른 B점퍼(남녀-N 상표, 청색)를 구입하였고, 2017년에는 다시 C점퍼(남자-NP 상표, 회색), D점퍼(여자-NP 상표, 빨강), E점퍼(여자-NS 상표, 남색)를 구입한 이후 신규 수요 때 C 점퍼(남자-NP 상표, 회색), F점퍼(여자-NP 상표, 검정), G점퍼(남자-NP 상표, 청색)을 구입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H점퍼(M 상표, 회색)와 I점퍼(E 상표, 베이지색) 점퍼를 구입하는 등 근무복을 색상, 디자인 등에 대하여 통일성 없이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경복궁관리소는 2017년에 조끼와 모자를 한꺼번에 구입(2017.5.11.)하면서 2가지 종류의 조끼와 3가지 종류의 모자를 구입하였으며, 반팔 티셔츠는 3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색상을 구입(2017.8.14.) 하는 등 근무복을 통일성 없이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창경궁관리소장, 창덕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장은** 근무복을 통일성 있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 **궁능문화재과장은**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을 업무 특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문 화 재 청

## 기 관 주 의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임면 보고 및 인계·인수 미흡

관계기관 창경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내 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에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지출원인행위부 등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9조(임면사항의 보고)에 따라 각 관서의 장은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0조(기금의 회계직 임면)에 따라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그러나, 창경궁관리소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사발령에 따라 일반 회계 및 문화재보호기금의 재무관과 지출관 등 12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7회에 걸쳐, 창덕궁관리소는 같은 기간 동안 14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7회에 걸쳐, 경복궁관리소는 13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8회에 걸쳐 변경 임면하였으나, 전·후임자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면사항을 문화재청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창경궁관리소는 온나라와 연계하여 디브레인으로 관련 권한 변경을 운영 지원과 및 정책총괄과에 요청하여 승인받아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후임자간 기명날인하여 회계장부를 마감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부 등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지 않고 권한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창덕궁관리소와 경복궁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보고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경궁관리소장, 창덕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 임면보고와 회계장부 마감 등을 통한 인계·인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